

총동아리연합회 규정

제정 : 2020.09.25.

개정 : 2021.03.04.

개정 : 2021.10.06.

개정 : 2023.08.03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본회는 동아리의 다양화, 자주화,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자치기구로서 대학 규정에 명시된 동아리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활동)

본회는 동아리 홍보, 행사, 교류 등 학내 동아리 활성화와 대학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.

제3조(권리와 의무)

- ① 본회 회원은 정규동아리와 준동아리에 가입된 회원으로 한다.
- ② 동아리는 대학 규정 및 본 규정을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을 가진다.
- ③ 동아리는 학교행사 또는 학생자치기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
- ④ 본회 회원은 규정 및 심의·의결기구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제4조(구성)

본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심의·의결기구 : 대표자회의, 중앙운영위원회, 분과회의
- ② 집행기구 : 기획운영팀, 커뮤니케이션팀, 디자인팀, 활동복지팀(개정 2021.03.04.)
 - 기획운영팀 : 동아리 전반적인 운영 및 행사를 기획, 실행한다.
 - 커뮤니케이션팀 : 동아리, 재학생, 총동아리연합회 간의 소통을 담당한다.
 - 디자인팀 : 동아리 전반적인 게시물 디자인, 홍보를 담당한다.
 - 활동복지팀 : 동아리 활동 복지를 담당한다.
- ③ 분과 : 문화, 봉사, 종교, 체육

제5조(총동아리연합회장)

- ① 총동아리연합회장(이하 회장)은 본회를 대표하며, 본회 심의·의결기구의 의장이 된다.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임기는 당선 시부터 차기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.

제6조(총동아리연합회 선거)

- ① 유권자는 동아리 대표로 구성된다.
- ② 동아리 대표 부재 등 투표참여가 불가할 경우 위임을 통해 대리선거 할 수 있다.
- ③ 회장, 부회장은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며, 이하 임원은 대표자회의를 통해 공정한 방법으로 선출한다.

제2장 대표자회의

제7조(구성)

회장, 부회장, 팀장, 분과별 대표, 정규동아리 대표로 구성한다.(개정 2021.03.04.)

제8조(권한)

- ① 동아리 전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심의·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와 분과의 신설, 통폐합을 심의한다.
- ③ 학교 규정 및 본 회 규정 개정에 대한 발의 및 심의를 한다.
- ④ 기타 주요안건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
제9조(회의)

- ① 정기회의는 학기별 1회 진행한다.
- ② 임시회의는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총동아리연합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3일 전에 회의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. 단,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10조(의결)

- ①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참석이 어려운 경우 회장의 사전승인 후 위임을 통해 대리참석이 가능하다.

제3장 중앙운영위원회

제11조(구성)

회장, 부회장, 팀장, 분과별 대표로 구성한다.(개정 2021.03.04.)

제12조(권한)

- ① 동아리 상·별점 및 징계를 의결한다.
- ② 동아리 평가 결과를 의결한다.
- ③ 기타 동아리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.

제13조(의결)

- ①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사안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.

제4장 분과회의

제14조(구성)

분과별 대표, 동아리 대표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서 분과장을 선출하여 구성한다.

제15조(업무)

- ① 동아리의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- ② 각 분과에 속한 동아리 간의 이견을 조정한다.
- ③ 사안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요청할 수 있다.

제5장 동아리 징계

제16조(경고와 제명)

① 본 회의 목적과 집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동아리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징계할 수 있다.

1. 경고 심의는 벌점이 15점 이상인 동아리
2. 제명 심의는 벌점이 25점 이상 또는 경고가 2회 이상인 동아리
3.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필요 시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② 제명이 결정된 경우 학생지원팀으로 즉시 통보하며, 학생취업처장의 승인을 통해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한다.

제17조(상벌점)

- ① 상벌점 산정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차기년도 2월말까지로 하며 누적하지 않는다.
- ② 상벌점 부여 및 조치사항은 별첨2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제6장 동아리 활동 일지

제18조(작성 및 제출)

동아리의 운영 및 활동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활동 일지를 작성해야 하며, 모든 동아리는 매년 12월 중 총동아리연합회가 공고하는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.

제19조(내용) 활동 일지에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.

1. 월별 활동내용
2. 대내외 활동 및 참여자 현황
3. 공모전 및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현황
4. 위 사항에 대한 사진과 증빙자료

제7장 동아리 평가

제20조(목적)

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내 동아리 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동아리 평가를 시행한다.

제21조(평가기준)

- ① 총동아리연합회에서 공고하는 시점에서 제출된 활동일지 평가점수와 당해연도 누적된 상벌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.
- ② 활동일지는 별첨1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, 상벌점으로 인한 상한은 없다.
- ③ 활동일지 평가는 총동아리연합회장, 부회장, 분과별 대표가 한다.

제22조(정규동아리)

- ① 당해년도 2학기에 제출된 동아리 회원 수로 차기년도 분과별 정규동아리 수를 산정한다.(개정 2023.08.03.)
- ② 동아리방은 정규동아리에 배정하며, 동아리 평가, 회원 수 등 우선순위는 학생장학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(개정 2023.08.03.)

제23조(평가결과)

- ① 합산점수에 따른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결한다.

1. 정규동아리 선정 : 총점 순으로 결정한다. 단, 총점 순으로 결정하더라도 70점 미만인 동아리는 정규동아리가 될 수 없다. 동점인 경우 활동내역, 활동적정성, 예산집행, 회원수 순으로 우선한다.
 2. 제명 : 60점 미만인 경우
 3. 평가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
- ②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평가결과는 학생지원팀으로 즉시 통보한다.

제8장 회칙 개정

제24조(발의)

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에서 발의하거나, 총동아리연합회장 발의로 한다.

제25조(공포)

- ① 최초 제정은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하고, 대학 장학지도위원회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.
- ② 추후 개정은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학생취업처장 승인을 통해 공포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시기)

- ① 본 규정은 2020학년도 2학기 학기개시일부터 소급적용된다.
- ② 2020학년도의 경우 감염병 재난에 따라 동아리 평가는 미 실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시기)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시기) ①개정 규정은 202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- ② 코로나로 인해 2021학년도 동아리 평가 및 상벌점은 별첨4와 별첨5로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시기)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첨1) 평가기준(개정 2023.08.03.)

평가자								
평가항목	평가내용	세부 배점	평가 점수	점수구간				
활동내역	대내외 행사 진행 및 참가 (행사결과보고서 제출 건)	30		8회 이상 (30)	6 ~ 7회 (25)	4 ~ 5회 (20)	2 ~ 3회 (10)	1회 (5)
예산 집행 (회의비로 50% 이상 집행 불가)	동아리 지원금 집행률	10		70% 이상 (10)	30%~70% (8)	30% 이하 (5)	-	-
	예산 집행 적정성	10		예산 집행이 구체적이고 운영목적 및 규정에 맞음 (10)	예산 집행이 대체적으로 운영목적 및 규정에 맞음 (5)	-	-	-
대표자 회의	대표자 회의 참석	10		2회 참석 (10)	1회 참석 (5)	미참석 (0)	-	-
동아리 회원	동아리 회원의 학과 수(학과 당 인원 3명 이상만 포함)	20		10개 이상 (20)	8~9개 (10)	6~7개 (5)	5개 (0)	-
	동아리 회원 수	20		5 1 명 이상 (2 0)	41 ~ 5 0 명 (1 5)	31 ~ 4 0 명 (1 0)	2 0 ~ 30 명 (5)	-
합계		100						
평가 종합 의견								

(별첨2) 상별 점 기준(개정 2023.08.03.)

구분	내용	점수
교외 대회 및 행사	참가	+5
	행사간 불화	-5
	교외 대회수상	+10
학교 주관 행사 (축제 등)	참가동아리	+10
	뒷정리 미흡	-5
	행사간 불화	-5
동아리방 관리	술병 및 취사도구 적발	-10
	전열기 사용 적발	-5
	동아리방 비밀번호 임의 변경	-10
	숙박 적발	-10
	음주 및 흡연 적발	-25
	동아리방 관리 불량(청소)	-5

(별첨3) (삭제 2023.08.03.)

(별첨4) (삭제 2023.08.03.)

(별첨5) (삭제 2023.08.03.)